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96 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 강경숙・황운하・김한규

조 국・김준형・이해민

이재정 · 김선민 · 박은정

김재원 · 강유정 · 신장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 치를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, 교원의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,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 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임(안 제29조의2 신설).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정신건강증진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다.

- 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
- 2.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
- 3.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- 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
- 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
-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 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지원,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정신건강증진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다. 1. 정신건강 상담・검사・진료비용 지원 2. 정신질환 예방・치료・재활프로그램 운영 3.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해소 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수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해소 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수업 의료기관에 위탁할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

-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다.
- ④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사 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지원,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